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479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부터 2020. 1. 8.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에 있는 '○○○○ 충남지사'에서 매월 20대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을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장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이 위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8호,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은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제1호),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제2호),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제3호),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제4호),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제5호),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휠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_\_\_\_\_

주    심            대법관            조재연 \_\_\_\_\_

                          대법관            민유숙 \_\_\_\_\_

                          대법관            천대엽 \_\_\_\_\_